

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의회의원 상해 보상심의회를 구성 운영함에 현실에 맞지 않는 항목을 수정함으로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“의무직 공무원 1인”을 “의무직 공무원 또는 보건직 공무원 1인”으로 개정 (안 제6조)

신·구조문 대비 표

현행	개정 (안)
제6조(심의회구성)①(생략) 1~2(생략) 3. 의무직 공무원 1인 4.(생략)	제6조(심의회구성)①(현행과 같음) 1~2(현행과 같음) 3. 의무직 공무원 또는 보건직 공무원 1인 4.(현행과 같음)